유언 공정증서 작성시 필요서류

* 유언자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기본증명서(상세), 신분증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
* 증인 2인 : 기본증명서(상세), 신분증, 도장
  - 증인은 유언자와 이해관계가 없는분 [가족, 친척 안됨]
    유언자 및 수증자의 직원, 외국국적소지자 안됨.

* 수증자 (유증 받으시는분): 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(상세), 도장

* 유언집행자(수증자지정가능) : 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(상세), 신분증, 도장

1. 신원조회 관련으로 방문 최소 일주일전에 유언집행자 1명 및 증인 2명의 기본증명서(상세)를 팩스로 공증사무실에 보내주셔야 합니다.
   (사전연락 필수) / (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)
2. 신원조회 완료 후 방문일정을 예약하고 모든 서류 원본 지참 후 유언자와 증인 2명은 반드시 공증 사무실에 함께 나오셔야 합니다.

* 유증할물건 (해당하시는 물건만 보시면 됩니다.)

1. 건물 : 건물등기부등본 / 건축물관리대장

1. 토지: 토지등기부등본 / 토지대장

1. 아파트 : 집합건물 등기부등본

1. 재건축아파트 : 분양계약서

1. 상가: 등기부등본

1. 금융자산 : 은행잔고증명서

법무법인 호수 공증실
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, 보림빌딩 1층 (장항동 891-4)
T: 031)932-3025~6 / F: 031)932-3028